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4. 11. 1.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422호로 2024년 10월 14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대형폐기물 관련 배출신고서 양식 및 수수료 조항을 개선하여  
민원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의  
어려움 발생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10.17.~2024.10.22.) 결과: 의견 없음

※ 부서의견(청소과)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 촉진을 위한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형폐기물 관련 배출신고서 양식과 환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으로 개정 이유 수정 의견을 부서에서 표명함.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대형폐기물 관련 배출신고서 양식 및 수수료 조항의 개선으로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소형가전제품의 무상수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행하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구민의 협력을 규정함.
- 안 제27조제1항제3호에서는 별표3에서 정하는 소형가전제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27조제3항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이 경과한 경우로 변경하였음.
- 안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별지 제8호 서식을 교체하였음.

## ○ 검토 결과

- 2022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대형폐기물의 배출개수가 1,760만개로 당시 전국 인구가 5,100만명 정도로 이를 평균 계산하면 한 명당 3개 정도 배출한 것을 알 수 있음. 게다가 배출 중량도 42만톤 정도로 1인당 하루 평균 발생량이 22.71g이 될 정도로 대형 폐기물의 발생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 전국 대형폐기물 발생 현황(2021년)

| 구분    | 1인당 하루 평균 발생량(g) | 배출개수(개)    | 계측중량(톤) |
|-------|------------------|------------|---------|
| 합계    | 22.71            | 17,608,536 | 428,070 |
| 폐전자제품 | 2.69             | 2,517,282  | 50,663  |
| 폐가구   | 18.11            | 12,574,400 | 341,344 |
| 기타 품목 | 1.91             | 2,516,854  | 36,061  |

- 이러한 통계의 수치는 안 제5조에서 구민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조치에 따르는 것은 환경을 위한 당연한 책무로 타당한 규정이라 할 것임.
- 한편, 안 제27조제1항제3호의 신설은 현재 시행중인 소형 가전제품의 수수료 미부과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보여짐.
- 안 제27조제3항에서 공휴일을 포함한 규정 변경은 구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의 취소(변경)의 마감일을

정확히 하여 수수료 환불 등에 대한 구민 편의를 제공한 사례로 판단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분리 배출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임을 구민들에게 각인 시킴과 동시에 정확한 규정 표현으로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 자료

## 1

## 폐기물관리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